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스마트물류 관리 시스템 활용, 물류 전과정 One-Stop 지원으로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강화 및 부담 완화
-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 지원규모 : 250개사
- ☐ 지원내용 : 상품 입·출고(점수), 재고관리, 배송 등 물류 전과정 지원
- ☐ 수행기관 : 씨제이대한통운(주)
- ☐ 사업기간 : 선정일 ~ '25. 12. 31.까지
- ☐ 추진일정

신청 · 접수	평가 및 선정	물류 지원
3/21 ~ 상시	4월 ~ 상시	4월 ~ 11월말
소상공인	한유원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별첨 2]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제외 품목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
불공정 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중복제한 : 아래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

세부사업명	
① (준비) 상품 개선 지원	⑥ (실전) SNS활용패키지
② (준비) 콘텐츠 제작	⑦ (실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③ (실전) 온라인 쇼핑몰 판매	⑧ (실전) 홍보
④ (실전) 라이브커머스	⑨ (도약) 스마트물류
⑤ (실전) 로컬상품관	

□ 스마트물류(풀필먼트) 지원

※ **풀필먼트란?** 상품을 지정된 풀필먼트센터(물류센터)에 사전 입고(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히 포장하여 배송하는 물류 서비스

○ (지원내용) 상품검수, 재고관리, 배송 등 물류 전과정 지원

- (입·출고시) 수행기관 풀필먼트센터 내 상품 관련 검수 지원

- (재고관리) 입고된 상품의 실시간 재고관리

* **재고 연동 가능 플랫폼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변동가능)

** 참여기업 요청시 재고실사 진행 가능 (월 1회)

- (포장·배송) 물류시스템 연동 주문건에 대해 포장 및 배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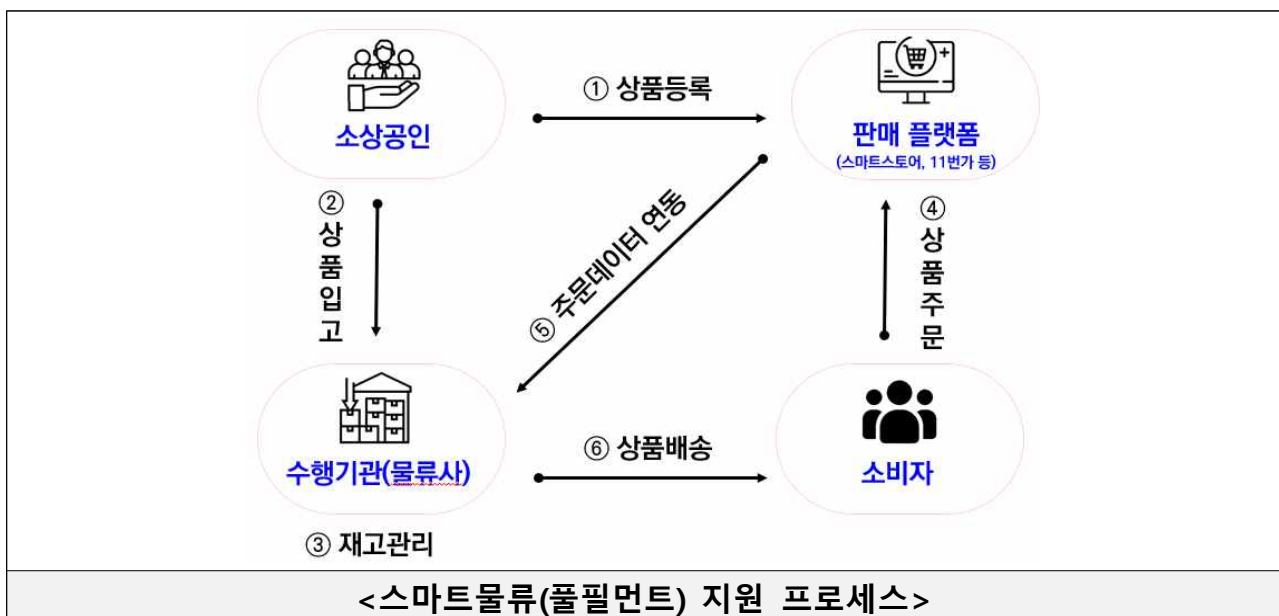
* **주문 연동 가능 플랫폼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카페24, 사방넷** (변동가능)

** 기타 플랫폼 주문 건에 대해서는 수기(엑셀) 등록 가능

- (배송CS) 씨제이대한통운 고객센터 활용, 배송 관련 CS응대 지원

- (데이터 관리) 물류시스템 활용, 데이터 관리 및 정보제공 등

- (기타) 물류, 이커머스 관련 교육 자료 배포 등



□ 참여기업 대상 주요혜택

① 판매플랫폼 제한 없이 배송서비스 지원

- 주 7일 배송서비스, 익일배송, 내일도착보장,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 * 단, 판매 플랫폼별 배송서비스 조건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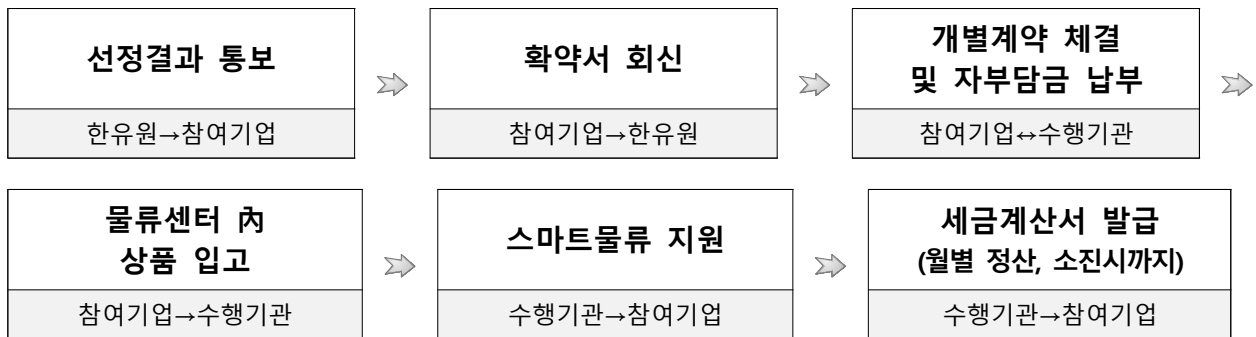
② 물류비 혜택 지원

- 입고 검수비 무료 지원, 재고보험비 지원, 출고비 할인 지원

③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인프라 투어 기회 제공

- * 신청기업 대상/ 일정은 추후 안내

□ 진행절차



4

참여기업 자부담금

□ 사업비 안내

- 총 사업비(최대 1,925,000원) 중 공급가액 90%(최대 1,575,000원)는 국비지원, 공급가액 10% 및 부가가치세(350,000원)는 참여기업 자부담입니다.
- * 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참여기업의 사업자 형태(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비는 국비와 자부담금 중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사용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 안내

구 분	총 사업비	국비지원(90%)	자부담금(10%)
공급가액	1,750,000원	1,575,000원	175,000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175,000원	-	175,000원
합 계	1,925,000원	1,575,000원	350,000원

- 참여기업 자부담금은 선정결과 통보시 안내된 '별도 지정 기일'까지, '수행기관의 별도 지정 계좌'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됨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3. 21. (금) ~ (연중 수시 접수)

* 모집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상품기술서(해당양식), 기타 가점서류(해당시) 등

구분	내용	발급처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 아이디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일치 필수	정부24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정부24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정부24
상품기술서	선정평가 시 주요 자료로 사용되므로 상세히 작성	공고문에서 양식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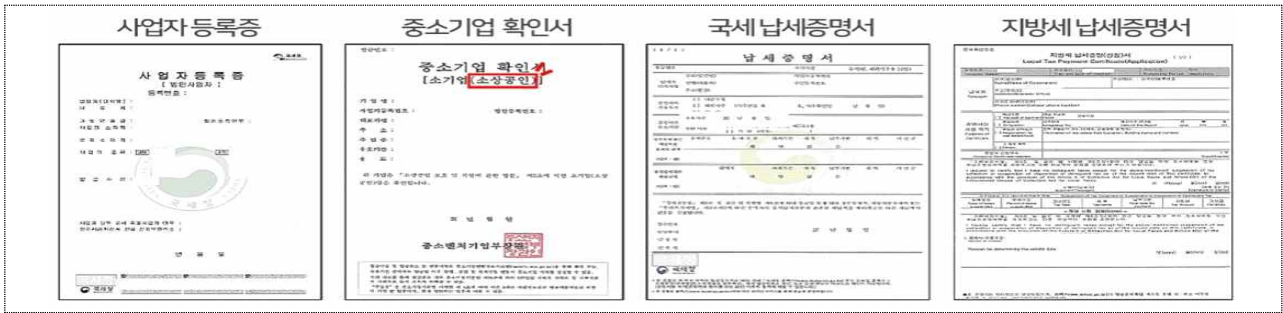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1 경우, 유효기간이 3/1 이거나 이후에 있어야만 인정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발급

**** 가점서류는 [별첨 1]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

[참고 1] 필수서류 참고 예시



[참고 2]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②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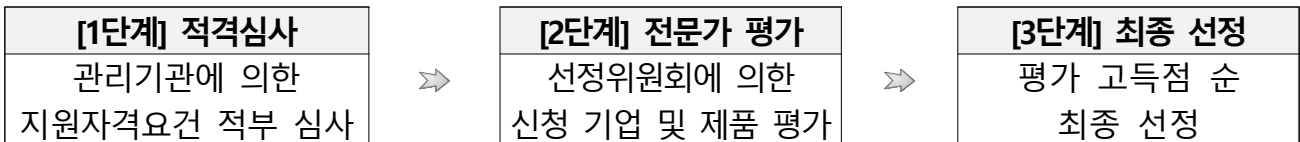


6

참여기업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 방법

- (적격심사)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상품기술서(해당양식)
 - ** 상품기술서는 선정평가 시 주요 자료로 사용되므로 해당양식으로 상세히 작성 요망
- (전문가 평가) : 수행기관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참여 기업 선정 평가 추진 (5명 내외 구성)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제 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본 사업은 참여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으로, 국비와 자부담금 중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사용합니다.
- 참여기업 자부담금 납부 후 사업 지원이 개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포기 불가합니다.
 - * 단, 참여기업 상품의 수행기관 물류시설 입고 전인 경우에 한해 중도포기 및 자부담금 반환 가능
-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체결하는 '개별계약서'를 준수합니다.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역량지원팀(02-6678-9868)
온판상담소(1899-0309)

별첨 1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 선정 우대

- 우대사항 :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①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해당 시 +5점
② '22~'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③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기업 * 글로벌 시장지원 사업에 한하여 가점 부여	
④ '22~'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해 사업신청 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판판대로 신청 페이지 內 '기타첨부자료', '증빙'에 압축 필요

- 증빙자료

구 분	증빙자료
①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 브랜드K 확인서
② '22~'24년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중장년 부문	○ 증빙 미제출 (※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③ '25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기업 * 글로벌 시장지원 사업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증빙 미제출 (※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④ '22~'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	○ 증빙 미제출 (※ 한유원, 소진공 별도 확인)

별첨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